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2022. 1.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목 차

I. RCEP 개요	1
II. 원산지 규정	5
III. 관세차별	18
IV. 원산지증명	24
V. 협정관세 적용	35
VI. 기타사항	40
참고 1. RCEP 원산지증명서 서식	43
참고 2. RCEP 관세율 구분 부호	46
참고 3. RCEP 협정의 원산지규정을 위한 이행 지침(영문) ..	48

< 일러두기 >

1. 이 지침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같은 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및 「RCEP 협정의 원산지규정을 위한 이행 지침」은 각각 '협정', '법', '영', '규칙', '고시', '원산지규정 이행지침'이라 지칭함.
2. 이 지침은 '22. 2. 1. 시행하며, 향후 회원국간 이행협상 결과 등을 반영한 개정·추가·변경사항이 관세청 FTA포털사이트를 통해 공지될 수 있음

I. RCEP 개요

1 적용 범위

□ [회원국] 한국,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 [발효] 우리나라는 '22. 2. 1. 오전 0시에 발효

○ 먼저 협정을 발효('22.1.1.)한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0개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협정 발효와 동시에 적용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등 4개국에 대해서는 각각 그 국가의 협정 발효일*부터 적용

* 자국 비준 문서를 기탁처(아세안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날 후 60일째 되는 날

※ 인도네시아 등 미발효된 국가의 협정 발효일은 관세청 FTA포털사이트 (<http://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를 통해 공지 예정

※ 협정 제20.6조(발효),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2 양허 현황

-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이 既 체결된 국가에 대해서는 일부 품목의 관세를 추가로 철폐하거나 현행 수준 유지
- 우리나라와 최초로 FTA를 체결하는 일본과의 양허 수준은 품목수 기준(83%, 양국동일), 수입액 기준(韓 76%, 日 78%)

《 회원국별 관세 양허 현황 (품목수 기준) 》

구분		양허수준	추가철폐 품목
아세안	수출	▶ [최 종] 91.9 ~ 94.5%(국가별 상이) [既체결] 79.1 ~ 89.4% * 싱가포르, 브루나이는 100% 철폐	▶ 자동차(부품 포함), 철강, 석유화학, 기계부품, 섬유, 장신구 등
	수입	▶ [최 종] 94.6 ~ 96.6%(국가별 상이) [既체결] 90.2 ~ 95.3%	▶ 농산물(곡류 가공품, 열대과일 등), 수산물(참치, 넙치, 김 등)
호·뉴	수출	▶ [최 종] 100% [既체결] 100%	-
	수입	▶ [최 종] 98.2%(호주), 97.9%(뉴질랜드) [既체결] 98.1%(호주), 97.9%(뉴질랜드)	▶ [호주] 기타육류, 기타어류, 뱀장어 ▶ [뉴질랜드] 기타어류
중 국	수출	▶ [최 종] 91.1% [既체결] 90.6%	▶ 스테인레스강선재, 화학기계, 선박용 부품, 의료용기기, 기타산업기계 등
	수입	▶ [최 종] 92.0% [既체결] 92.0%	▶ 텍스트린, 녹용
일 본	수출	▶ [최 종] 83% * 농산물: 54.1%, 수산물 46.9%	▶ 플라스틱 제품, 합성수지, 증류주 (소주 등), 판유리, 정밀화학원료 등
	수입	▶ [최 종] 83% * 농산물: 46.2%, 수산물 47.9%	▶ 플라스틱 제품, 판유리, 석유화학 (제품·중간원료), 정밀화학원료, 맥주 등

※ 협정 부속서 I 관세 양허표, 시행령 제2조제21항 및 별표17의6

3 관세 인하 또는 철폐

- ☐ 협정 부속서 I (관세 양허표)에 따라 다른 당사국들의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신의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
- ☐ 협정 부속서 I (관세 양허표)에 따른 관세율보다 세계무역기구 협정(WTO)에 따른 최혜국 실행관세율이 낮을 경우, 다른 당사국들의 원산지 상품에 최혜국 실행관세율을 적용 가능

4 상품분류 · 관세평가

- ☐ [상품분류] 당사국들 간 무역에서의 상품분류는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합치되어야 함

※ 협정 제2.7조(상품 분류)

- ☐ [관세평가] 당사국들 간 교역되는 상품의 관세가격 결정 목적상 1994년도 GATT 제7조 및 관세평가협정 제1부 및 부속서 I의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

※ 협정 제2.8조(관세 평가)

5 관세 양허표의 변경

- ☐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주기적 수정 후 개정된 품목분류에서 부속서 I의 관세 양허표 이행을 위해 각 당사국이 양허표를 변경하는 경우 부속서 I의 관세 양허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보장

※ 협정 제2.14조(관세 양허표의 변경)

6

관세면제 대상 일시수입 물품 등

- [일시수입 물품]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명시된 기간 내 재수출될 예정이며, 사용에 따른 통상적인 감가상각 및 손실을 제외한 어떠한 변화도 거치지 않은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시 수입 상품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 면제 가능

《규칙 제30조제1항 적용 대상 물품》

- ① 언론장비, 텔레비전 방송용 장비, 소프트웨어, 방송·영화 촬영 장비 등 일시 입국하는 사람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 ②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물품(구성부품, 보조기구와 부속품 포함)
- ③ 운동경기용 물품(시범용 및 훈련용 물품 포함)
- ④ 상용견품
- ⑤ 물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거나 임대하기 위하여 그 성질·작동 등을 보여주는 시연용 영상 또는 음향 기록매체. 다만, 일반대중을 위한 방송용은 제외

- [상용견품] RCEP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용견품은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 면제 가능. 다만, 견품 이외의 용도로 판매되거나 사용되기에 부적합하도록 천공, 절단 등 견품화 처리가 된 물품 또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금액 이하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 한정
- [컨테이너·팔레트 일시반입] 각 당사국은 자신의 법과 규정 또는 자신이 당사국인 관련 국제 협정 규정에 규정된 대로, 국제운송에서 상품의 선적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컨테이너·팔레트에 대하여 원산지와 관계없이 무관세 일시반입 허용

※ 협정 제2.10조(상품의 일시반입) 및 제2.11조(컨테이너 및 팔레트의 일시 반입), 법 제30조제1항, 규칙 제30조제1항 및 제6항

II. 원산지 규정

1 개 요

- [특징] ① 역내(15개국) 원산지결정기준 통합, ② 회원국 전역에서 조달한 재료의 누적 인정, ③ 원산지 자율증명(인증수출자 한정) 도입
-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결정의 일반기준과 품목별기준을 규정
 - 당사국 내에서 ① 완전 획득·생산, ②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 ③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한 생산(부속서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 충족)
 - 당사국 내 재료의 누적은 협정 발효 즉시 시행, 완전누적은 시행 유보(발효 후 5년 내에 검토 완료)
- [원산지절차] 원산지증명, 인증수출자, 특혜관세 적용, 원산지 검증,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대해 규정
 - (원산지증명) ① 기관발급, ②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증명, ③ 수출자 또는 생산자 자율증명 방식*
 - * ③ 수출자·생산자 자율증명 방식은 협정발효 후 10년 내(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20년 내) 시행하도록 규정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시행시기 미정
 - (인증수출자) 인증수출자 요건 및 의무, 인증수출자 DB 구축·등록 등 수출당사국 권한있는 당국의 의무 등을 규정
 - (특혜 적용) 유효한 원산지증명에 기초하여 특혜관세 신청, 수입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기간 내 사후신청 가능
 - (검증) 수입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수입자, 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 수출당사국의 발급기관 등에 서면으로 정보 요청 가능, 필요한 경우 수출자 및 생산자에 대한 방문검증 실시

2 정 의

□ 협정 제3장(원산지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규정

- (생산) 재배, 채굴, 수확, 농작, 사육, 번식, 추출, 채집, 수집, 포획, 어로, 양식, 덧사냥, 수렵, 제조, 생산, 가공 또는 조립을 포함한 상품 획득의 방법
- (상품) 모든 제품, 생산품, 물품 또는 재료
- (재료)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상품
-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 상업적 목적으로 호환 가능하고 그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상품 또는 재료
-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수입, 경비, 비용, 자산 및 부채의 기록, 정보의 공개 그리고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하여 당사국에서 컨센서스로 인정된 또는 실질적이고 권위있는 지지를 받는 원칙(세부 표준, 관행, 절차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지침 포함)
- (본선인도가격(FOB)) 운송수단과 관계없이, 해외 최종 선적 항구 또는 장소까지 드는 운송비용을 포함한 상품의 본선인도가격
- (운임보험료포함가격(CIF)) 수입국으로 들어오는 항구 또는 반입지까지의 보험비용 및 운임을 포함한 수입된 상품의 가격
- (권한 있는 당국) 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되고 그 밖의 당사국들에 통보된 하나 또는 복수의 정부 당국
- (관세당국) 각 당사국의 법에 따라 그 당사국의 관세법 및 규정의 행정 및 집행을 담당하는 모든 당국
- (발급기관) 당사국에 의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지정되거나 권한을 받고 그 밖의 당사국들에 통보된 기관

※ 협정 제3.1조(정의)

3

일반 원칙

- [원산지 상품] 다음의 상품을 협정상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다만, 협정 제3장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원산지 상품의 종류 》

- ① [완전생산(WO)]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 ②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PE)] 하나 이상의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재료로만 당사국에서 생산된 상품
- ③ [품목별 원산지기준 충족(PSR)]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당사국에서 생산하였으나, 품목별 원산지 규정(부속서 3-가)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

- 완전생산 상품과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상품은 해당 상품의 품목별 원산지기준과 상관없이 원산지 지위 인정
- 상품의 가치는 1994년도 GATT 제7조 및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산정되며, 비용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기준에 따라 기록·유지됨

※ 협정 제3.2조(원산지 상품)

- [완전생산 상품] 다음은 당사국에서 완전 획득·생산으로 간주

《 완전생산 상품 》

- ① 당사국에서 재배 및 수확, 수집 또는 채집된 과일, 꽃, 채소, 나무, 해초, 균류, 그리고 살아있는 식물을 포함한 식물 및 식물성 상품
- ② 당사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 ③ 당사국에서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한 상품
- ④ 당사국에서 수행된 수렵, 뺏사냥, 어로, 농작, 양식, 채집 또는 포획에 의해 획득된 상품
- ⑤ 당사국의 토양,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의 하층토로부터 추출되거나 채취된 ①부터 ④까지에 포함되지 않는 광물 및 그 밖의 천연 자원

- ⑥ 국제법에 따라 당사국들 및 비당사국들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의 하층토에서 그 당사국의 선박에 의하여 획득된 어로 상품 및 그 밖의 해양생물, 그리고 그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획득된 그 밖의 상품. 다만, 어떠한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획득된 어로 상품 및 그 밖의 해양생물의 경우, 그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인은 그러한 배타적 경제수역을 개발할 권리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밖의 상품의 경우, 그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인은 국제법에 따라 그러한 해저 또는 해저 하부의 하층토를 개발할 권리가 있어야 함
- ⑦ 그 당사국의 선박에 의하여 국제법에 따른 공해로부터 획득된 어로 상품 및 그 밖의 해양생물
- ⑧ 그 당사국의 가공선박에서 ⑥부터 ⑦까지에 언급된 상품만을 사용하여 가공되거나 만들어진 상품
- ⑨ 상품의 처분, 원재료의 회수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합한 다음의 상품
 - 가) 당사국에서의 생산 또는 소비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
 - 나) 당사국에서 수집된 중고품
- ⑩ ① 부터 ⑨ 까지에 언급된 상품 또는 그 파생품만으로 그 당사국에서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 협정 제3.3조(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상품] 한 당사국의 원산지 재료로만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이외에도

- 다른 당사자에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협정 제3.4조에 따라 원산지 재료의 누적을 인정하여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상품으로 인정 가능
- 수출당사국에서 수행된 공정이 협정 제3.6조의 “최소 공정 및 가공”에 해당하더라도 원산지 지위가 인정되나, 원산지 국가는 원산지 재료 중 최고가치를 기여한 당사국으로 달리 결정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관세차별」 항목 참조

□ [품목별 원산지기준 충족 상품] II.4. 품목별 원산지기준 참조

4 품목별 원산지기준

- [개요] 협정 부속서 3-가에서 총 5,205개 세번(HS 2012, 6단위기준)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개별 조건을 규정
- (특징) 우리나라가 既 체결한 FTA와 유사하나, 최신 생산공정 반영과 역내 공급망 활용 극대화 등을 위해 일부기준 완화

《 RCEP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현황 》

업종	PSR 구조
화학	▶ 대부분 "세번변경기준(CTH, CTSH)"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중 선택 ▶ 일부 품목은 공정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반응(Chemical Reaction)"도 선택 가능
섬유·의류	▶ 대부분 "세번변경기준(CC, CTH)"으로 규정 ▶ 한-아세안 FTA 등에서 규정된 의류의 공정기준(재단 및 봉제 수행) 삭제
철강	▶ 대부분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중 선택 ▶ 스테인레스강 중 일부 품목은 "6단위 세번변경(CTSH)"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중 선택
자동차	▶ [완성차]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으로 한-아세안 FTA(RVC45) 대비 완화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중 선택
기계, 전기·전자	▶ 대부분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중 선택 ▶ 세탁기·냉장고·에어컨 등 일부 품목은 "6단위 세번변경(CTSH)"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중 선택
농축수산물	▶ 대부분 "완전생산기준(WO)" 또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CC)" ▶ 수산물(어육 등), 낙농품(분유 등), 화초류 등 일부 품목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CC)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중 선택
가공식품류	▶ 대부분 "2단위 세번변경기준(CC)" 또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적용

※ RCEP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HS 2012 기준이며, 협정 발효 後 당국간 이행 협상을 통해 HS 2022로 현행화될 예정(관세청 FTA포털사이트를 통해 공지)

□ [역내가치포함비율(RVC) 계산] 공제법 또는 집적법 사용

《역내가치포함비율 계산 방법》

▶ **공제법(Build-down):** 상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제외

$$= \frac{\text{본선인도가격(FOB)} - \text{비원산지재료가치(VNM)}}{\text{본선인도가격(FOB)}} \times 100\%$$

▶ **집적법(Build-up):** 상품에 포함된 원산지 재료의 가치와 제조에 사용된 경비 등을 합산

$$= \frac{\text{원산지재료가치(VOM)} + \text{직접노무비} + \text{직접경비} + \text{이윤} + \text{그 밖의 비용}}{\text{본선인도가격(FOB)}} \times 100\%$$

《역내가치포함비율 계산 시 사용되는 용어》

▶ **역내가치포함비율(RVC):** 백분율로 표시

▶ **원산지재료가치(VOM):** 획득 또는 자가생산되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 부품 또는 생산품의 가치

▶ **비원산지재료가치(VNM):**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

▶ **직접 노무비:** 임금, 보수 및 그 밖의 피고용인 수당 포함

▶ **직접 경비:** 총 간접비용

- **(FOB 가격의 특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물품의 실제 FOB 가격을 알 수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최종 확인 가능한 가격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 산정 방법 》

- ▶ 획득 경로별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 산정 기준
 - ① (수입된 재료) 수입 시 재료의 운임보험료포함가격(CIF)
 - ② (당사국에서 획득된 재료) 최초로 확인 가능한 지불된 가격 또는 지불해야 하는 가격
- ▶ 원산지가 결정되지 않은 재료는 비원산지 재료로 취급
- ▶ 확인 및 입증이 가능한 다음의 비용은 비원산지 재료 또는 원산지가 결정되지 않은 재료의 가치에서 차감할 수 있음
 - ① 상품을 생산자에게 운송하는데 발생한 화물비, 보험료, 포장비 및 그 밖의 운송 관련 비용
 - ② 면제, 환급되거나 달리 회수되는 관세 외의 관세, 조세 및 통관 중개수수료
 - ③ 재활용 가능한 부스러기나 부산물의 가치를 차감한 폐기물과 손상물의 비용

※ 협정 제3.5조(역내가치포함비율의 산정), 원산지규정 이행지침 6번

- ☐ [세번변경기준(CTC)] 비원산지 재료에 대해서만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며, 특정 세번으로부터의 변경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경우 그 배제는 비원산지 재료에만 적용
- ☐ [화학반응(CR)] 해당 화학반응의 결과로 생산된 모든 상품에 대해 원산지 지위 인정

《 화학반응의 정의 및 제외 대상 》

- ▶ (정의) 생화학 가공을 포함하여, 분자 내 결합의 파괴 및 새로운 분자 내 결합의 생성, 또는 분자 내 원자의 공간배열 변경을 통하여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를 만들어내는 가공을 의미
- ▶ (제외대상)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반응으로 불인정
 - ① 물 또는 그 밖의 용제에 용해되는 것
 - ② 용매수를 포함한 용제의 제거
 - ③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 협정 부속서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

- [최소 공정 및 가공] 협정 제3장(원산지 규정)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에 다음에 해당하는 공정만 수행된 상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지위 불인정

《협정 제3.6조에 따른 최소 공정 및 가공》

- ① 운송 또는 보관 목적상 상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보존 공정
- ② 운송 또는 판매를 위한 상품의 포장 또는 전시
- ③ 감별, 체질, 선별, 분류, 연마, 절단, 쪼개기, 분쇄, 구부리기, 감기 또는 풀기로 구성되는 단순한 가공
- ④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에 마크, 라벨, 로고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의 부착 또는 인쇄
- ⑤ 상품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으면서 물이나 다른 물질로 단순 희석
- ⑥ 제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 ⑦ 동물의 도살
- ⑧ 단순한 페인팅 및 광택 공정
- ⑨ 단순 탈피, 씨 제거 또는 탈각
- ⑩ 다른 종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품의 단순한 혼합
- ⑪ ①부터 ⑩까지의 공정 중 둘 이상의 조합

※ “단순한”은 특별한 기술 또는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활동을 의미

- 협정 제3.6조의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최소 공정 및 가공’ 요건은 협정 제2.6조제5항의 관세차별 상품이 수출 당사국 원산지를 인정받기 위한 ‘최소공정’과 동일(적용범위는 상이)

※ 협정 제3.6조(최소 공정 및 가공)

5 특혜 규정: 누적

- [누적] 재료누적은 협정 발효 즉시 시행, 완전누적(공정 및 부가가치의 누적)은 모든 회원국에 대한 협정 발효 後 5년 내 검토
- (재료누적) 한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가 다른 당사국에서 상품 또는 재료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그 최종 상품 또는 재료의 작업이나 가공이 발생한 당사국의 원산지 지위 인정
 - (완전누적) 당사국들에서 수행되는 모든 생산(공정누적) 및 상품에 부가되는 가치(부가가치 누적)에 대한 누적 확대의 적용 여부를 모든 회원국이 협정을 발효하는 날부터 검토
- [누적 적용의 예외] 협정 부속서 I 부록에 따른 민감물품의 원산지 결정에 필요한 추가요건* 충족 여부를 계산할 때는 재료누적을 적용하지 않음

* 수출당사국에서 수출물품 총 가액의 20% 이상 부가가치가 발생

- [누적 증빙]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수입물품의 원산지검증 수행 시 누적이 입증서류로서 원산지증명을 요구할 수 있음

※ (유의사항) 다만, 현재까지 누적이 적용된 재료(또는 상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방법, 입증서류 등이 합의되지 않았으므로, 안정적 특혜 적용을 위해 누적을 활용하려는 상품에 대한 RCEP 원산지증명 확보 권고

※ 협정 제3.4조(누적)

6

특례 규정: 기타

- [최소허용수준(미소기준)]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상품이라도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최소허용수준 인정 기준》

- ①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상품 본선인도가격(FOB)의 10% 이하
- ② 섬유 및 의류(제50류 ~ 제63류로 분류되는 상품)의 경우에는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비원산지 재료의 중량이 상품 중량의 10% 이하

※ 협정 제3.7조(최소허용수준)

- [포장재료 및 용기] 용도에 따라 달리 적용

- (운송·선적용) 상품의 원산지 지위 결정 시 고려하지 않음
- (소매 포장용) 해당 상품에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산지 지위 결정 시 고려하지 않음

*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포장재료, 용기의 원산지 지위에 따라 각각 원산지 재료 또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에 포함하여 계산

※ 협정 제3.8조(포장과 포장재료 및 용기의 취급)

-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상품과 함께 제시된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및 사용 설명서나 그 밖의 안내서는 다음 조건에 따라 원산지 지위 결정에 반영

《 원산지 지위 결정 시 부속품 등의 적용 기준 》

- ① 세번변경기준 또는 가공공정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부속품 등을 고려하지 않음
- ② 역내가치포함비율(RVC)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속품 등의 원산지 지위에 따라 각각 원산지 재료 또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에 포함하여 계산

※ 다만, 부속품 등은 해당 상품과 동일한 송장이 발급되어야 하며, 수량 및 가치가 해당 상품 대비 통상적 수준이어야 함

※ 협정 제3.9조(부속품, 예비부품 및 도구)

□ [간접재료*] 아래의 물품은 생산된 장소와 관계없이 원산지 재료로 취급됨

* 상품의 생산,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지만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거나, 상품의 생산과 관련된 건물의 유지 및 설비의 운영에 사용되는 물품

《 간접재료로 인정 가능한 물품 》

- ① 연료 및 에너지
- ② 도구, 형판 및 주형
- ③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 및 상품
- ④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운영에 사용되는 윤활제, 그리스, 혼합물 및 그 밖의 재료
- ⑤ 장갑, 안경, 신발, 의류, 그리고 안전장비 및 보급품
- ⑥ 상품의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 장치 및 보급품
- ⑦ 촉매제 및 용제
- ⑧ 상품에 결합되지 않으나 그 상품 생산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상품

※ 협정 제3.10조(간접재료)

□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 아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원산지 지위 결정

* 동종이고 상업적으로 동질하며, 동일한 기술적 및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최종 상품에 결합되는 경우 별도로 구별되지 않는 상품 또는 재료를 의미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에 대한 원산지 인정 기준》

- ① 각각의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보관
- ②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가 혼합되는 경우 수출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서 사용되는 재고관리기법*에 따라 원산지 판정
- * 다만, 해당 재고관리기법은 해당 회계연도에 동일하게 사용되어야 함

《(참고) 다른 FTA에서 인정되는 재고관리기법》

- ① (개별법)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구분하여 각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그 제품의 원산지 결정
- ② (선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먼저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먼저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제품의 원산지 결정
- ③ (후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가장 최근에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최근에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제품의 원산지 결정
- ④ (평균법) 보관 중인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의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그 제품의 원산지를 결정. 이 경우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의 구성 비율 계산은 보관 또는 취득한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의 취득가격이나 수량 등을 기준으로 적용
- ⑤ ① ~ ④ 외에 상품이 생산된 회원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 협정 제3.11조(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

□ [생산에 사용된 재료(중간재)]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원산지 상품이 다른 상품의 생산에 재료(중간재)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재료(중간재)가 최종 상품의 생산자에 의하여 생산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산지 재료로 인정

※ 협정 제3.12조(생산에 사용된 재료)

7

직접운송

- [원칙] 수출당사국에서 수입당사국으로 직접 운송되지 않는
상품은 원산지 지위 불인정
- 직접운송의 입증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음
- [예외] 상품이 수출당사국과 수입당사국 외에 하나 이상의
당사국들(이하 “중간 경유 당사국들”) 또는 비당사국들을
경유하여 운송되는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접운송된 것으로 간주

《 직접운송 예외 인정 요건 》

- ① 중간 경유 당사국들 또는 비당사국들에서 하역, 재선적, 보관 또는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수입 당사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모든 공정 이외의 공정이 수행되지 않아야 하고,
- ② 상품이 경유하는 중간 경유 당사국들 또는 비당사국들에서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있어야 함
- ※ 상기 요건이 충족됨을 입증하기 위해 수입자는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
에서 요구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복합 또는 결합운송 서류, 그 상품에 대한
상업송장 원본의 사본, 재무 기록, 비조작증명서 또는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같은 상업선적 서류나 화물운송 서류 등

- ※ 직접운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수출당사국과 수입당사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회원국을 비당사국과 동일하게 취급함에 유의

※ 협정 제3.15조(직접운송)

Ⅲ. 관세차별

1 개 요

- 당사국은 각 회원국에 대한 관세 양허표를 개별적으로 작성하므로, 같은 품목이라도 수출국가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는 경우 발생
 - 이에 따라 세율이 유리한 국가를 통한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RCEP 회원국 내에서도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기 위한 요건 규정
 - * (예시) A국 상품이 B국을 단순 경유하여 C국(A국產 10%, B국產 2% 양허)에 수입
- [대상] 수출국은 RCEP 회원국이어야 하고, 수입물품은 RCEP 협정 제3장을 충족하는 원산지 상품이어야 함
 - (관세차별 일반품목*) 수입당사국이 수출당사국에 대한 수입 물품의 관세율을 상이하게 지정한 품목
 - * 수출당사국에서 최소공정 이외의 추가공정을 수행하도록 규정

《회원국별 관세 양허표 운영 현황》

- ▶ 우리나라 및 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중국은 각 회원국별로 상이한 관세 양허표를 운영하는 반면, 브루나이·캄보디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싱가포르·태국·호주·일본·뉴질랜드는 회원국 전체에 단일한 관세 양허표 운영
- ▶ 다만, 단일한 관세 양허표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품목마다 국가별 관세율을 달리 지정한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수출입 상품에 대한 수입당사국의 관세 양허표를 확인하여 관세차별 품목 여부 파악

- (민감품목*) 수입당사국이 협정 부속서1 부록에 규정한 품목
- * 수출당사국에서 수출물품 총 가액의 20% 이상 부가가치가 발생(DV 20)하도록 규정

《회원국별 민감품목 운영 현황》

- ▶ 우리나라 및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태국·베트남·중국·일본만 운영

2 관세차별 물품의 원산지 국가 결정 방법

※ RCEP 원산지 지위 결정(협정 제3장) → RCEP 원산지 국가 판단(협정 제2.6조)

- 수출자(또는 생산자)는 수출품이 협정 제3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RCEP 원산지 상품인 경우, 아래 단계에 따라 원산지 국가를 판단하여 원산지증명의 'RCEP Country of Origin'란에 기재(신청)

※ 이전 단계에서 원산지 국가가 결정되면 다음 단계를 고려할 필요 없음

《 (1단계) 수입당사국의 민감품목 지정여부 확인: 협정 부속서1 부록 》

[민감품목의 원산지 국가 결정] : 추가요건(Domestic Value addition)*

- ▶ 수출당사국에서 수출물품 총 가액의 20% 이상의 부가가치(DV 20)가 발생한 경우
: 원산지 국가는 수출당사국
- ▶ 수출당사국에서 수출물품 총 가액의 20% 미만의 부가가치가 발생한 경우
: 원산지 국가는 원산지 재료에 최고 가치를 기여한 당사국

* (유의사항) ❶수출당사국이 아닌 다른 당사국의 재료는 DV 계산 시 원산지 재료의 가치에 포함되지 않음 ❷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세번변경인 경우에도 원산지 국가 판단을 위해서는 역내산 재료의 가치를 확인해야 할 수 있음

《 (2단계) 수입당사국의 관세차별 일반품목 여부 확인: 관세 양허표 》

[관세차별 일반품목의 원산지 국가 결정] : 최소공정* 이외의 추가공정

- ▶ 협정 제3.2조 가목 및 다목에 따른 상품의 경우
: 원산지 국가는 수출당사국
- ▶ 협정 제3.2조 나목 + 수출당사국에서 최소공정 이외의 추가공정이 수행된 경우
: 원산지 국가는 수출당사국
- ▶ 협정 제3.2조 나목 + 수출당사국에서 최소공정만 수행된 경우
: 원산지 국가는 원산지 재료에 최고 가치를 기여한 당사국

* (유의사항) 협정 제2.6조제5항(최소공정)은 제3.6조(최소 공정 및 가공)과 동일하나, 협정 제2.6조제5항은 이미 원산지 지위를 가진 상품의 모든 재료에 적용되는 반면 협정 제3.6조는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해 비원산지 재료에 대해서만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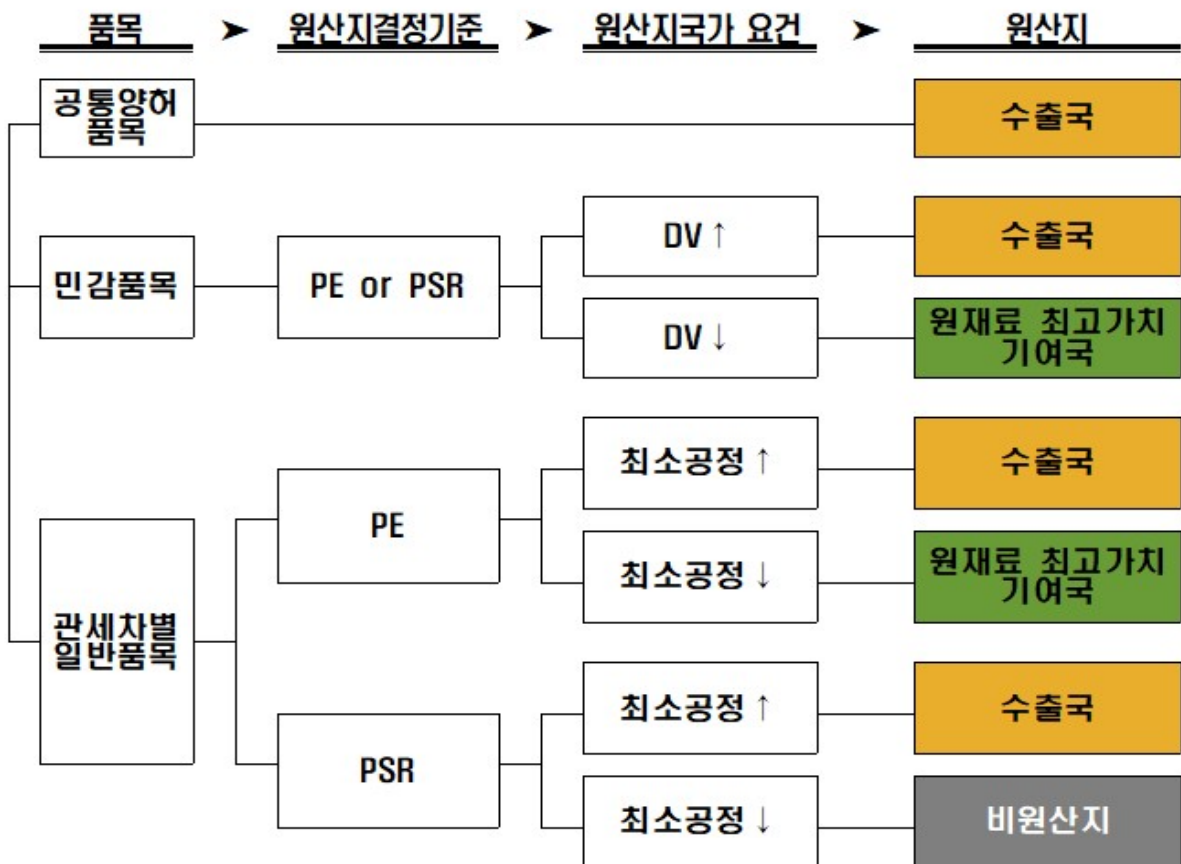
《 (3단계) 협정 제2.6호제6항에 따른 최고세율 국가 확인 》

[협정 제2.6호제6항에 따른 원산지 국가 결정] : 수입자의 입증

- ▶ 원산지 재료에 기여한 당사국 중 수입당사국이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 (원산지 국가명에 * 표시), 또는
- ▶ 모든 회원국 중 수입당사국이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 (원산지 국가명에 ** 표시)

□ 실무적으로 관세차별은 수출당사국이 원산지 국가가 아닌 경우 즉, 협정 제3.4조(누적)를 적용하는 물품, 협정 제3.19조(연결 원산지 증명)를 적용하는 원산지 상품 등에 고려되어야 할 것임

《 관세차별 적용결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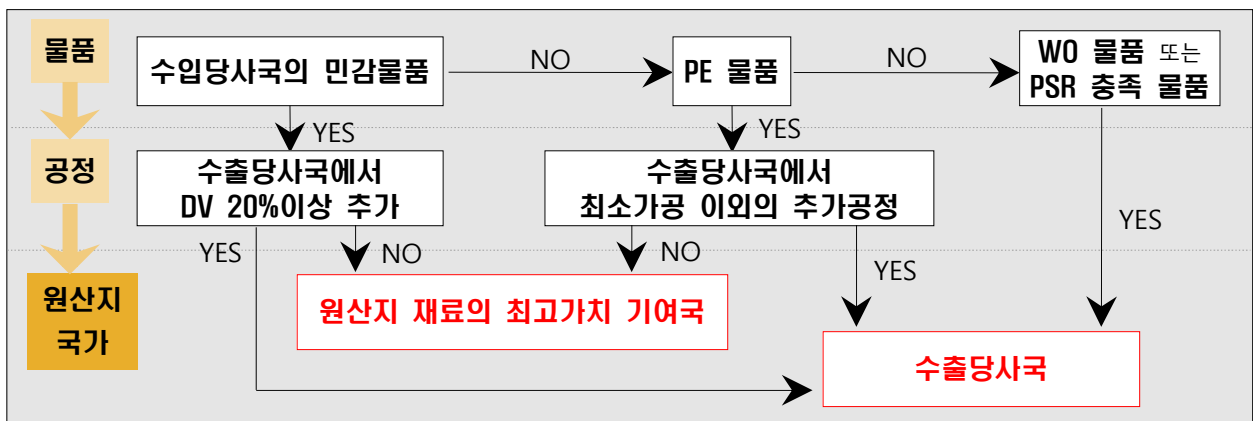


- 수출자의 원산지 국가 판단을 돕기 위해 RCEP 이행가이드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산지 국가 결정 프로세스를 규정

※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히 수정하였으며, 정확한 내용은 이행가이드 및 Overleaf note 확인

- 이 방법에 따르면 수출자는 수입당사국의 관세율표를 비교할 필요 없이 원산지 국가를 판단할 수 있음

《 관세차별 적용을 위한 원산지 국가 결정 순서도 》



상 황	RCEP 원산지 국가
① 상품이 수입당사국의 민감품목으로, 추가요건 불충족 ② 상품이 수입당사국의 민감품목은 아니지만,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상품으로 수출당사국에서 최소공정만 수행*	원산지 재료 중 최고가치를 기여한 당사국
③ 상품이 수입당사국의 민감품목으로, 추가요건 충족 ④ 상품이 수입당사국의 민감품목이 아니고,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상품으로 수출당사국에서 최소공정 이외의 공정 수행 ⑤ 상품이 수입당사국의 민감품목이 아니고, 품목별 원산지기준 충족 물품 ⑥ 상품이 수출당사국의 완전생산물품	수출당사국

* 이 경우 관세차별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공통양허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수출 당사국과 원산지 국가가 다르게 결정될 수 있으나, 관세율은 동일함

※ 협정 제2.6조(관세 차별), 부속서1 부록, 원산지규정 이행지침 8번

[민감품목]

- ▶ 일본이 A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하고, 한국 5%, 중국 10% 관세 양허
- ▶ 한국에서 호주(\$20), 베트남(\$30), 중국(\$40) 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A를 생산하고 일본에 수출

- ⇒ ① A의 한국내 부가가치가 \$10인 경우(FOB \$100) **원산지 중국**
 ② A의 한국내 부가가치가 \$60인 경우(FOB \$150) **원산지 한국**

[관세차별 일반품목]**상황 1**

- ▶ 일본이 A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하지 않고, 한국 5%, 중국 10% 관세 양허
- ▶ 한국에서 호주(\$40), 중국(\$50) 원산지 재료로 A를 생산(FOB \$100)하고 일본에 수출

- ⇒ ① 한국에서 최소공정만 수행한 경우 **원산지 중국**
 ② 한국에서 최소공정 외의 추가공정을 수행한 경우 **원산지 한국**

상황 2

- ▶ 일본이 A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하지 않고, 한국 5%, 중국 10% 관세 양허, A의 품목별 원산지기준은 RVC 50

- ▶ 한국에서 미국(\$40), 중국(\$50)산 재료로 A를 생산(FOB \$100)하고 일본에 수출

- ⇒ ① 한국에서 최소공정만 수행한 경우 **역외산** (RCEP 특혜관세 ×)
 ② 한국에서 최소공정 외의 추가공정을 수행한 경우 **원산지 한국**

[협정제2.6조제6항]

- ▶ 일본이 A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하고, 한국 5%, 중국 10%, 베트남 15%, 나머지 회원국에 10% 관세 양허
- ▶ 한국에서 미국, 한국, 중국산 재료(가격 미상)를 사용하여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A를 생산(FOB \$100)하고 일본에 수출

- ⇒ ① 원산지 재료의 기여국인 한국·중국 중 고세율인 **중국산**(이 경우 수입자에게 입증 책임), 또는
 ② 회원국 중 고세율인 **베트남산**

《 민감품목의 원산지 국가 결정 실무(예시) 》

- ▶ 대상품목: 무수프탈산(HS 2917.35)
- ▶ 제조 및 수출국: 한국 / ▶ 수입국: 인도네시아
- ▶ 인도네시아측 관세양허: (MFN) 5%, (중국産) 미양허, (한국産) 4.6%

< 원재료 사용 내역 >

품 명	HS 코드	원산지	원산지 재료 여부	한국산 재료 여부	가격
크실렌	2902.11	중국	○	X	\$20
산화바나듐	2825.30	호주	○	X	\$5
경비+이윤					\$3
국내 운송비					\$0.50
상품가격					\$28.50

- ▶ 원산지 판정 결과: 원산지결정기준은 충족하나 중국산으로 특혜 실익 없음
 - 원산지 지위: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PE)되었으므로 RCEP 원산지 상품
 - 원산지 국가: 수출국 부가가치가 20% 미만($(28.5-25)/28.5=12.2\%$)이므로 원산지 재료의 최대가치 기여국인 중국산으로 판정

《 협정 제2.6조제6항가호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실무(예시) 》

- ▶ 대상품목: 고무매트(HS 4016.91)
- ▶ 제조 및 수출국: 한국(다만, 최소공정 이상 공정 미수행) / ▶ 수입국: 필리핀
- ▶ 필리핀측 관세양허: (중국産) 0%, (인도네시아産) 0%, (한국産) 7%

< 원재료 사용 내역 >

품 명	원산지	역내산 재료 여부	가격
합성고무	중국	○	미상
염화비닐	인도네시아	○	미상
플라스틱 시트	한국	○	미상

- ▶ 원산지 판정 결과: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한국에 대한 관세율(7%) 적용
 - 원산지 지위: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PE)되었으므로 RCEP 원산지 상품 (한국에서 불인정공정만 수행한 것은 원산지 지위에 영향X)
 - 원산지 국가: 수출국에서 불인정공정만 수행되었고 원산지 재료 가격을 알 수 없어 원산지 국가 판정이 불가하므로, 원재료 공급국 중에 최고 관세율이 적용되는 한국산으로 적용 가능
- ※ 원산지증명 제11번란 작성 시 RCEP 원산지 국가명 뒤에 "*" 표기

IV. 원산지증명

1 개 요

☐ [원산지증명 대상]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물품에 원산지증명 가능

《 원산지증명을 위한 요건 》

- ① 협정 제3장(원산지 규정)의 모든 관련 규정 준수
- ② 협정 제2.6조(관세 차별)에 따라 원산지 국가 결정
- ③ 특혜관세 적용 대상이 되는 모든 상품이 개별적으로 자격을 갖추어야 함

☐ [발급방식] ① 기관발급 또는 ②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증명*

* 수출자·생산자 자율증명(완전 자율증명) 방식은 협정발효 후 10년 내(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20년 내) 시행하도록 규정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시행시기 미정

☐ [발급형태] 영어로 작성된 ① 서면본(종이) 또는 ② 전자본*

《 회원국별 인정되는 원산지증명 형태 》

회원국	종이 C/O 원본의 스캔본	전자 발급된 C/O의 인쇄본	모든 전자적 C/O (eCO, 스캔본 등 포함)
한국	○	○	○
브루나이		○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		○	
싱가포르	○	○	○
베트남			○
호주	○	○	○
중국		○	○
일본		○	○
뉴질랜드			○

※ 수입국에서 특혜 적용 시 인정되는 원산지증명의 전자본 형태는 회원국 별로 상이하며, 상기 표는 참조용으로 각 회원국별 인정 기준은 RCEP 홈페이지(<https://rcepsec.org/rules-of-origin>) 확인

《 우리나라의 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출력) 방법 》

- ① 서면본: 원본(Original Copy) 1부만 인쇄 가능
- ② 전자본: 수출상대국이 전자본을 인정하는 국가인 경우 PDF 내려받기* 가능
- * 시행일은 관세청 FTA포털사이트를 통해 별도 공지

※ RCEP의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EODES) 도입은 향후 검토

- [국가명 기재] 원산지증명 상의 국가명은 아래 기준에 따른 영문명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다른 방식(ISO부호 등)은 사용 불가

《 RCEP 원산지증명 상의 국가명 기재 방법 》

국문명	영문명	국문명	영문명
호주	Australia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Lao PDR
브루나이다루살람	Brunei Darussalam	말레이시아	Malaysia
캄보디아왕국	Cambodia	미얀마연방	Myanmar
중화인민공화국	China	뉴질랜드	New Zealand
인도네시아공화국	Indonesia	필리핀공화국	Philippines
일본국	Japan	싱가포르공화국	Singapore
대한민국	Korea	태국왕국	Thailand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Viet Nam

- [유효기간] 원산지증명은 발급 또는 작성일로부터 1년간 유효

- [적용시점] 우리나라의 협정 발효일('22.2.1.) 부터 발급(작성) 가능

- 다만, 우리나라 협정 발효일에 아직 협정이 발효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협정 발효일*부터 발급(작성) 가능

* 해당 일자 는 관세청 FTA포털사이트를 통해 별도 공지 예정

※ 협정 제3.16조(원산지 증명), 원산지규정 이행지침 1번 · 5번

2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 [신청인]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을 받은 그들의 대리인

□ [발급기관] 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 각 회원국별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RCEP 홈페이지(<https://rcepse.c.org/rules-of-origin>)에서 확인 가능

□ [발급절차] 수출물품의 선적 전까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기관에 제출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http://cert.korcham.net>)에 접속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신청·발급

○ (인증수출자 혜택)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별 또는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첨부서류 제출 생략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첨부서류 》

- ①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증명서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 국외반출신고서 사본
나.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 보세운송신고서 사본
다. 우편물·탁송품 및 별송품: 영수증·선하증권 사본 또는 그 밖에 계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
- ②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 ③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 ④ 원산지소명서.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음
- ⑤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 (발급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며,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해당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음)

□ [소급발급] 비자발적 오류, 누락 또는 그 밖의 사유 및 정정 발급 상황에서 원산지증명서가 선적전*까지 미발급된 경우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 신청 가능

* [소급발급 대상기간 비교] (한-중국 FTA) 선적일 후 7근무일 이내에 미발급
(한-아세안 FTA)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미발급

○ 소급발급 원산지증명서에는 “ISSUED RETROACTIVELY” 문구 기재

□ [재발급]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도난, 분실 또는 멸실된 경우, 원본의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진정등본 발급 신청 가능

○ 재발급 원산지증명서에는 원본과 동일한 발급번호, 발급일자와 “CERTIFIED TRUE COPY” 문구 기재

□ [정정발급] 원산지증명서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발급기관은 아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할 수 있음

《 원산지증명서 정정 방법 》

- ① 기존의 원산지증명서를 무효화하고 신규 원산지증명서 발급
- ② 오류가 있는 부분을 줄을 그어 지우고 추가 또는 정정사항 기재
다만, 변경된 사항에는 발급기관의 서명과 인장을 날인하여야 함

《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정정발급 시 발급기관 제출서류 》

재발급	정정발급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② 재발급 신청사유서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② 원산지증명서 원본 (정정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원본 제출 조건으로 사본 제출 가능) ③ 정정발급 신청사유서 ④ 정정사유 입증 가능한 서류

※ 협정 제3.17조(원산지 증명서), 규칙 제10조, 원산지규정 이행지침 2번

3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의 작성방법

□ [원산지증명서 서식] “붙임 1” 참조

□ [작성방법] 원산지증명서의 주요 항목은 아래 방법에 따라 기재

《 원산지증명서 주요 항목 기재 방법 》

① [3번란, 8번란] 생산자

- 상품 생산자의 상세정보(이름, 주소 및 국가)를 아는 경우 3번란에 기재
- 생산자가 다수일 경우 3번란에 “SEE BOX 8”라고 기재하고, 각 물품에 대한 생산자의 상세정보를 8번란에 기재
- 생산자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를 원하는 경우 “CONFIDENTIAL” 기재 가능. 다만, 권한있는 당국 또는 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제공될 수 있음
- 생산자의 상세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 “NOT AVAILABLE” 기재 가능

② [9번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 수출상품의 6단위 세번으로, 협정 부속서 3-가를 기초로 작성

③ [10번란]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결정기준	10번란에 기입
가. 협정 제 3.2 조가호를 충족하는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WO
나. 협정 제3.2조나호를 충족하는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상품	PE
다.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상품. 이 경우 그 상품은 협정 부속서 3-가에 규정된 품목별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세번변경 - 역내가치포함비율 - 화학반응	CTC RVC CR
라. 협정 제 3.4 조를 준수하는 상품	ACU
마. 협정 제 3.7 조를 준수하는 상품	DMI

※ “라.” 기준은 “나.” 또는 “다.” 기준에 병기하여 사용되며,
“마” 기준은 “CTC” 기준에 대해서만 병기하여 사용할 수 있음

⑤ [11번란] RCEP 원산지 국가

- 이 지침 Ⅲ.2. '관세차별 물품의 원산지 국가 결정 방법'에 따라 결정된 원산지 국가를 IV.1. '국가명 기재'에 따른 영문명으로 기재
- 다만, RCEP 원산지 국가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가 제공한 정보에 기초하여 최고세율 국가명 다음에 별표(*) 표시
(협정 제2.6조제6항가호) 원산지 국가명 우측에 "*" 표시
(협정 제2.6조제6항나호) 원산지 국가명 우측에 "***" 표시

⑥ [12번란] FOB 가격

- 역내가치포함비율 기준으로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는 경우에만 기재

⑦ [13번란, 14번란, 17번란] 송장

- 송장번호와 날짜를 13번란에 기재하되, 다수의 송장 사용 시 각 물품별로 송장번호와 날짜를 기재
- 수입에 사용된 송장이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해 발급되지 않은 경우 17번란의 "Third-Party invoicing" 박스에 체크 표시하고, 해당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이름과 국가를 14번란에 기재

⑧ [14번란, 17번란] 연결 원산지증명서

- 연결 원산지증명서인 경우 17번란의 "Back-to-back Certificate of Origin" 박스에 체크 표시하고, 원본 원산지증명서의 참조번호, 발급일, 발급 국가, 최초 수출당사국의 RCEP 원산지 국가,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최초 수출 당사국의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14번란에 기재

⑨ [17번란] 소급발급

- 협정 제3.17조제8항에 따라 소급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인 경우 17번란의 "ISSUED RETROACTIVELY" 박스에 체크 표시

⑩ [14번란] 진정등본

- 협정 제3.17조제9항에 따라 원본 원산지증명서의 진정등본이 발급된 경우 "CERTIFIED TRUE COPY" 문구와 진정등본의 발급일자를 14번란에 기재

※ 규칙 제15조제20항 및 별지 제24호의5 서식

4 자율증명 원산지신고서

□ [작성권한]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산지인증수출자

《 RCEP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한 원산지인증수출자 》

- ① 영 제7조제1호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② 영 제7조제2호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다만, RCEP 협정에 대해 인증받은 품목(HS6단위 기준)으로 한정한다.

※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생산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완전 자율증명)는 협정발효 후 10년 이내 이행될 예정

□ [서식] 현재 협정 부속서 3-나(최소 정보 요건) 제2항의 정보가 포함된 어떤 서식이라도 사용이 가능하고, 향후 회원국 간 이행협상을 통해 원산지신고서 표준 서식이 제정될 예정*

※ 표준 서식 제정 직후 관세청 FTA포털사이트를 통해 공지

○ 원산지신고서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고, 증명인의 이름과 서명, 작성일자가 기재되어야 함

《 원산지신고서 최소 정보 요건 》

- ① 수출자 이름 및 주소
- ② 생산자 이름 및 주소(아는 경우로 한정)
- ③ 수입자(수하인) 이름 및 주소
- ④ 상품명, HS6단위
- ⑤ 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인증번호 또는 수출자 및 생산자 식별번호
- ⑥ 고유 참조번호
- ⑦ 원산지결정기준
- ⑧ 원산지신고서에 명시된 상품이 협정 제3장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는 인증된 서명권자의 증명

- ⑨ 협정 제2.6(관세차별)에 따른 RCEP 원산지 국가
- ⑩ FOB가격(원산지 지위 결정에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사용한 경우로 한정)
- ⑪ 상품의 수량
- ⑫ 연결 원산지신고서의 경우 원본 발급번호, 발급일, 최초 수출국 RCEP 원산지국가, 적용 가능한 경우 최초 수출당사국의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 (유의사항) 다만, 현재 회원국 간 원산지신고서 표준서식이 합의되지 않았음을 고려하여, 통관애로가 빈번히 발생하는 일부 회원국에 대해서는 안정적 특혜 적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기관발급 원산지증명 활용 권고

※ 협정 제3.18조 및 부속서3-나 제2항, 규칙 제15조제120항,
원산지규정 이행지침 3번

5 인증수출자

- [인증수출자 DB] 협정 제3.2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협정 제3.16조제1항나목의 원산지신고서 작성이 가능한 우리나라 인증수출자 정보*를 RCEP 회원국의 권한있는 당국에서 조회 (관세청 영문 홈페이지)할 수 있도록 조치

* 인증수출자의 상호, 주소, 인증 번호, 발급일 및 만료일(가능한 경우로 한정), 최소 HS2단위 수준의 인증 적용대상 상품목록 등

- [인증수출자 지정 특례] 협정 발효 즉시 원산지 자율증명 활용 지원을 위해 인증수출자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 심사

- (기간) ① '22. 1. 28.까지 접수된 건은 간이인증 절차 적용 가능
② 협정 발효 이후 접수건은 일반인증 절차로 진행

※ 인증 신청서 접수 시 20일 이내 심사 (보정기간(5~10일)은 제외함)

- (신청대상)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신청접수) 관할지* 본부세관 또는 직할세관

*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1 참조

《 RCEP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 접수처 》

구 분	연락처	이메일
인천본부세관	032-452-3169	incheonsupport@korea.kr
서울본부세관	02-510-1387	FTA010@korea.kr
부산본부세관	051-620-6963	busansupport@korea.kr
대구본부세관	053-230-5192	daegusupport@korea.kr
광주본부세관	062-975-8195	ftafta071@korea.kr
평택직할세관	031-8054-7175	fta016@korea.kr

○ (간이인증) 중국·아세안·베트남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RCEP 인증 추가 신청 시 품목에 따라 간이한 절차 적용

《 간이인증 및 일반인증 절차 》

- ① (간이인증) 인증 신청 품목이 "RCEP 인증 심사 간소화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인증 신청서"와 아래 첨부서류 제출
 - (간소화 품목) 관세청 FTA포털사이트에 850개 품목 공지
 - (첨부서류) 원산지소명서, 약속서, 원산지관리 전담자 증빙자료
- ② (일반인증) 일반적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심사 방법에 따름

○ (인증서 발급) 인증 효력은 협정 발효 이후에 부여

《 인증 특례 심사 절차(예시) 》

(예시)	< 인증 효력 없음 >		< 유효기간 5년 >
21.12.8. 인증 신청	21.12.31. 심사 완료 → 인증서 미발급	'22.2.1 RCEP 발효일 → 인증서 발급	

※ 협정 제3.21조, 규칙 제18조, 원산지규정 이행지침 3번

6

연결 원산지증명

- [개요] 협정 제3.19조에 따라 최초 수출국에서 작성·발급된 원산지증명을 기초로 하여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작성·발급
- [증명 대상] 연결 원산지증명은 아래 기준에 따라 중간 경유 당사국의 발급기관 또는 인증수출자 등이 작성·발급

《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발급) 주체 》

- ① 중간 경유 당사국의 발급기관
- ② 중간 경유 당사국의 인증수출자. 다만, 중간 경유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인증 품목으로 지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해서만 작성

※ 중간 경유 당사국과 수입당사국 모두가 완전 자율증명을 이행하는 경우에만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가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 가능

- [요건] 연결 원산지증명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발급) 요건 》

- ① 유효한 원산지증명 원본 제시
- ② 연결 원산지증명의 유효기간은 원본 원산지증명의 유효기간 이내
- ③ 연결 원산지증명은 협정 부속서 3-나에 따른 원본 원산지증명의 정보 포함
- ④ 재포장 또는 하역, 재선적, 보관, 탁송물의 분리나 수입당사국의 법, 규정, 절차, 행정적 결정 및 정책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로 한정한 라벨링 같은 물류 활동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상품을 수입당사국에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모든 공정을 제외하고, 연결 원산지증명을 사용하여 재수출될 탁송물은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추가 가공을 거치지 않을 것
- ⑤ 분할 수출 선적되는 경우, 그 분할 수출 수량은 원산지증명 원본의 전체 수량을 대신하여 제시되고, 분할 선적에 따라 재수출된 전체 수량은 원산지증명 원본의 전체 수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
- ⑥ 연결 원산지증명에 원본 원산지증명의 발급일 및 발급 번호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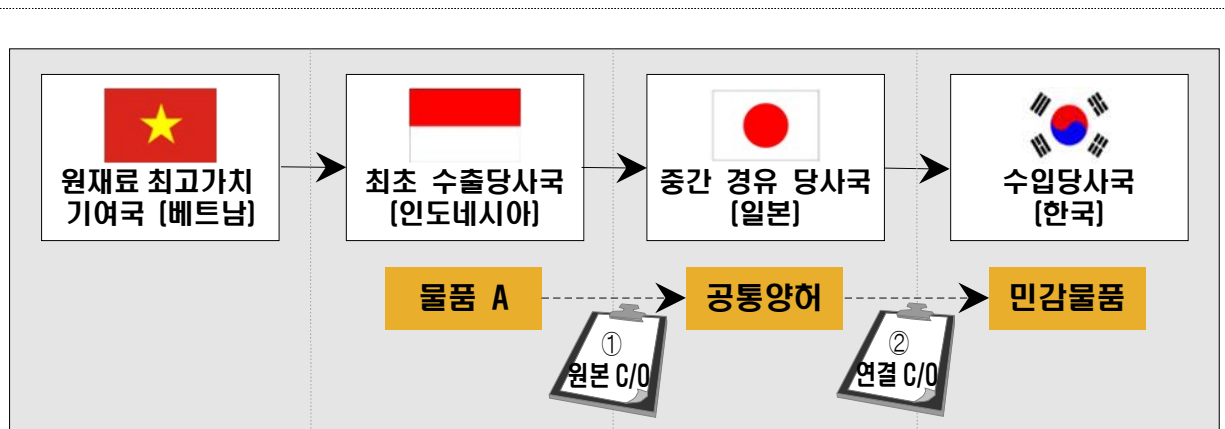
□ **[FOB 가격 기재방법]** 연결 원산지증명에 기재되는 FOB 가격은 최초 수출국이 아닌 중간 경유국의 FOB 가격이어야 함

□ **[관세차별 물품에 대한 적용]** 연결 원산지증명의 대상물품이 수입당사국의 관세차별 품목인 경우, 중간 경유 당사국의 수출자*는 협정 제2.6조에 따른 원산지 국가를 판단하여 연결 원산지증명의 'RCEP Country of Origin'란에 기재(신청)

* (기관발급) 연결 원산지증명 발급 신청인, (자율발급)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자

- 이 경우 연결 원산지증명과 원본 원산지증명의 RCEP 원산지 국가가 상이할 수 있고, 따라서 중간 경유 당사국의 수출자에게 RCEP 원산지 국가에 대한 증명 의무 부여

《 연결 원산지증명과 원본 원산지증명의 원산지 국가 상이(예시) 》



① 원본 원산지증명의 RCEP 원산지 국가: 인도네시아

② 연결 원산지증명의 RCEP 원산지 국가: 인도네시아의 DV에 따라 상이

- 인도네시아의 DV > 20% : 원산지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의 DV < 20% : 원산지 베트남

□ **[원산지검증]** 연결 원산지증명에 대해서도 협정 제3.24조의 검증 절차 적용

※ 협정 제3.19조, 원산지규정 이행지침 4번 · 6번 · 8번

V. 협정관세 적용

1 협정관세 적용 시점

□ [적용시점] 우리나라의 협정 발효시점('22. 2. 1. 00시) 이후부터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

○ (유의사항) 우리나라의 협정 발효시점 이후에 작성·발급된 원산지증명에 근거하여 RCEP 협정관세 적용 신청 가능

□ [경과규정] 아래 경과규정 적용 대상 물품으로 협정 제3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원산지 상품은 우리나라의 협정발효일로부터 180일 이내('22. 7. 30.까지)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음

*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

《 경과규정 적용 대상 물품 》

우리나라에 대한 협정 발효일 당시에

- ① 운송 중인 물품이거나,
- ②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이거나,
- ③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

○ (유의사항) 원산지증명이 우리나라의 협정발효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작성되고, 직접운송 입증서류와 함께 제출되어야 함

※ 협정 제3.30조(통과 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 규정)

2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시기

- [원칙] 수입물품에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입자는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
 - (제출서류) 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제출
 - (증빙서류) 협정 제3.16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을 포함하여 수입물품이 협정 제3장의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원산지 증빙서류를 갖추고,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
- [예외: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신청 가능
 - (제출서류) 세관장에게 ①협정관세 적용신청서, ②수입·납세 신고정정신청서, ③원산지증명서를 포함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
 - (증빙서류) 수입물품은 수입 당시 협정 제3장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때 이를 입증하는 원산지 증빙서류를 제출
- [유효기간] 원산지증명서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일을 기준으로 발급일 또는 작성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함
 - 다만,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유효기간의 계산에서 도착일 다음날부터 협정관세 적용신청일까지의 기간을 제외

※ 협정 제3.22조(특혜관세 대우의 신청), 법 제8조 및 제9조

3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방법

□ [관세율 구분부호] 수입신고서 및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는 RCEP 관세율 구분부호(“붙임2” 참조)와 협정관세율을 기재

○ (유의사항) 아래 예시를 참조하여 원산지증명의 RCEP 원산지 국가에 따라 적합한 관세율 구분부호 입력

※ 원산지증명의 RCEP 원산지 국가는 수입당사국에서 관세율 적용 목적으로 기재되는 것이므로 수입물품의 실제 원산지 국가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관세율 구분부호 입력 방법(예시) 》

- ① 수출당사국과 원산지증명의 원산지 국가가 일본이고, 하나의 품목번호에 대해 적용되는 서로 다른 협정세율 중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 “FRCJP1”
- ② 수출당사국은 베트남이지만 원산지증명의 원산지 국가가 중국이고, 하나의 품목 번호에 1개의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 “FRCCN1”

□ [인정되는 원산지증명 방식] 우리나라는 아래 중 하나의 원산지증명만을 인정

《 수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시 인정되는 원산지증명 》

- ① 수출당사국의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ion of Origin)
- ② 수출당사국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Declaration of Origin)

※ 우리나라의 완전 자율발급 시행 이전에 수출당사국이 완전 자율발급을 시행 하더라도 수출당사국의 수출자(또는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은 불인정

○ (유의사항)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의 경우 작성자의 수출당사국 인증수출자 여부 사전 확인* 필요

* 국가별 인증수출자 확인 방법은 관세청 FTA포털사이트를 통해 안내

- [원산지증명 제출] 수입자는 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와 그 밖의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필수 제출

- 우리나라가 인정하는 원산지증명의 형태는 아래와 같음

《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제출 가능한 원산지증명의 형태 》

▶ (서면본) 다음 중 하나의 것

- ① 종이 원본. 다만, 세관장이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경우 사본제출 스탬프를 날인한 사본으로 대체 가능
- ② 전자적 형태(Digital Format)로 발급받은 파일(PDF 등)을 인쇄한 것
- ③ 종이 원본을 스캔하여 이미지화한 파일(PDF, JPEG 등)을 인쇄한 것

▶ (전자본) 다음 중 하나의 것

- ① 전자적 형태(Digital Format)로 발급받은 파일(PDF 등)
- ② 종이 원본을 스캔하여 이미지화한 파일(PDF, JPEG 등)

《 (참고)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 스탬프 양식 》

본 사본이 원본과 다를 경우 관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세관에서 요구시 원본을 제출하겠습니다.

수입자 ○○○ (서명)

※ 협정 제3.22조(특혜관세 대우의 신청), 법 제8조, 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 원산지규정 이행지침 5번

4 원산지증명 제출 면제

□ 과세가격이 미화 200달러 이하인 수입물품은 원산지증명 제출 면제*

* 구매영수증,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상품의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의 제출을 면제하지 않음

《 원산지증명 제출 면제 제외 대상 》

- ① 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등 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지 않도록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입하는 물품인 경우, 또는
- ② 해당 수입이 당초 계획된 일련의 수입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 협정 제3.22조(특혜관세 대우의 신청)제3항, 법 제8조제2항, 영 제4조제3항제1호

5 사소한 오류 및 불일치

□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가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요구 없이 협정관세를 적용

○ 다만, 물품의 원산지 지위에 합리적 의심을 발생시키는 오류인 경우 제외

《 협정관세 적용 가능한 원산지증명의 오류 》

- ① **(FOB 가격 상이)** 원산지증명에 기재된 FOB 가격과 수입신고 시 제출된 상업송장에 기재된 FOB 가격이 상이한 경우
- ② **(HS번호 상이)** 원산지증명에 기재된 HS번호와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HS번호가 상이하나, 상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인정여부 판단
- ③ **(그 밖의 사소하고 경미한 오류)** 뒷면 주해(OVERLEAF NOTES) 미인쇄, 국가명 표기 오류, 사소한 불일치, 정보의 누락, 타자오류 등 세관장이 물품의 원산지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협정 제3.26조(사소한 불일치 또는 오류), 규칙 제21조제5항, 원산지규정 이행지침 6·7번

VI. 기타사항

1 원산지검증

- RCEP 회원국간 수출입된 물품의 원산지증빙서류 진위여부 및 원산지의 정확성에 대해 다음의 방법으로 원산지검증 수행

《 우리나라로 수입된 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원산지검증 》

- ① [간접검증] 협정 제3.24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출국의 관세당국 또는 증명서발급기관에 추가 정보 요청
- ② [직접검증] 협정 제3.24조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직접 서면으로 추가 정보 요청
- ③ [직접검증] 협정 제3.24조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직접 서면으로 추가 정보 요청 또는 사업장 방문검증
 - 사업장 방문검증은 ①의 간접검증 결과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 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실시될 수 있으며, 당사국간 합의된 절차에 따라 수출당사국의 동의와 지원을 받아 수행됨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

- [간접검증] 협정 제3.24조에 따라 수입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추가 정보 요청을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자, 생산자에게 조사를 실시하고
 -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출국의 관세당국에 결과를 통지
- [직접검증] 협정 제3.24조에 따라 수입국의 관세당국이 수출자, 생산자에게 직접 서면으로 추가 정보 요청 또는 간접검증 이후 사업장 방문검증
 - 사업장 방문검증의 경우 법 제20조에 따라 조력을 받을 수 있음

※ 협정 제3.24조(검증), 법 제17조~제19조, 영 제11조~13조, 제15조 및 제16조, 규칙 제22조~제25조,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2 협정관세 적용제한

- 세관장은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 이 경우 세관장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고, 필요한 경우 가산세를 징수

《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 》

- ① 협정관세 적용의 대상이 되는 수입물품이 협정 제3장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②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협정관세 적용에 필요한 협정 제3장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 ③ 세관장이 협정관세 적용의 대상이 되는 수입물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한 경우
- ④ 협정 제3.24조에 따른 정보의 서면 요청에 수출당사국의 수출자, 생산자, 관세당국 또는 발급기관이 기한 내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경우
- ⑤ 협정 제3.24조에 따른 현지조사 동의 요청에 대해 수출당사국의 수출자 등이 동의 여부를 요청의 접수일로부터 30일내에 통보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은 경우
- ⑥ 그 밖에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협정 제3.25조(특혜관세대우의 거부), 법 제35조, 영 제44조

3 원산지 사전심사

- [목적] 해당 상품의 수입신고 전 협정관세 적용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관세청장(원산지검증과)이 심사하여 확정
- (신청인) 수입자, 수출당사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와 그 대리인
 - (신청대상) 협정 제3장에 따른 상품의 원산지 여부
- [효력] 사전심사 결과(사전심사서)는 3년간 유효
- 수입신고된 상품의 내용이 사전심사서와 동일한 경우 협정 관세의 적용 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FTA관세법 제31조에 따른 원산지 사전심사 절차》

단계	세부단계	주 체	주요 내용
신청	사전심사 신청	신 청 인	▶ 서류제출(신청서, 심사요청관련서류) ▶ 수수료(3만원)
	⓪		
접수	신청서류 확인.접수	담당부서	▶ 사전심사 신청대장 기록, 수수료 수납
	⓪		
검토 결정	신청내용 심사.검토	담당부서	▶ 신청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리
	반려 및 보정		▶ 반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반려 ▶ 보정 : 5일 이상의 기간
⓪			
통지 공표	사전심사서 통지	담당부서	▶ 사전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심사결과 인터넷 공표		▶ 관세청 FTA포털사이트에 사전심사 결과 등재
⓪			
사후 관리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 청 인	▶ 이의제기 기간 :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담당부서	▶ 처리기간 : 접수일부터 30일, 보정:20일
	사전심사 변경	신 청 인 담당부서	▶ 사실관계나 상황이 변경되는 경우 사전심사내용 변경.철회

※ 협정 제4.10조(사전심사결정), 법 제31조 및 제32조, 영 제37조~제40조, 규칙 제31조~제33조, 고시 제5장

1. Goods Consigned from (Exporter's name, address and country)				Certificate No. _____ Form RCEP			
2. Goods Consigned to (Importer's/ 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RTIFICATE OF ORIGIN Issued in..... (Country)			
3. Producer's name, address and country (if known)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if known) Departure Date: Vessel's name/Aircraft flight number, etc.: Port of Discharge:							
5. For Official Use Preferential Treatment: ☐ Given ☐ Not Given (Please state reason/s)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of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Importing Country							
6. Item number	7.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8. Number and kind of packages; and description of goods.	9. HS Code of the goods (6 digit-level)	10. Origin Confering Criterion	11. RCEP Country of Origin	12. Quantity (Gross weight or other measurement), and value (FOB) where RVC is applied	13. Invoice number(s) and date of invoice(s)
14. Remarks							
15. Declaration by the exporter or produc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s are correct and that the goods covered in this Certificate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These goods are exported to: (importing country) Place and date, and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16. Certification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information herein is correct and that the goods describe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eal or stamp of Issuing Body			
17. ☐ Back-to-back Certificate of Origin ☐ Third-party invoicing ☐ ISSUED RETROACTIVELY							

OVERLEAF NOTES

1. **CONDITIONS:** To be eligible for the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under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the Agreement), goods should:
 - a. fall within a description of goods eligible for concessions in the importing Party; and
 - b. comply with all relevant provisions of Chapter 3 (Rules of Origin) and if applicable, Article 2.6 (Tariff Differentials) of Chapter 2 of the Agreement.
2. **EXPORTER AND CONSIGNEE/IMPORTER:** Provide details of the exporter of the goods (including name, address and country) and consignee/importer (including name, address, and country) in Box 1 and Box 2, respectively.
3. **PRODUCER:** Provide the details of the producer of the goods (including name, address and country) in Box 3, if known. In case of multiple producers, indicate "SEE BOX 8" in Box 3 and provide the details in Box 8 for each item. If the producer wishes the information to be confidential, it is acceptable to state "CONFIDENTIAL", however, the producer information may be availabl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r authorised body upon request. In case the details of the producer are unknown, it is acceptable to state "NOT AVAILABLE".
4. **DESCRIPTION OF GOODS:** The description of each good in Box 8 should be sufficiently detailed to enable the products to be identified by the customs officer examining them.
5.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HS):** The HS should be at the 6-digit level of the exported product and based on Annex 3A of the Agreement.
6. **ORIGIN CONFERRING CRITERIA:** For the goods that meet the origin conferring criteria, the exporter should indicate in Box 10 of this Form, the origin conferring criteria met, in the manner shown in the following table:

Origin conferring criteria	Insert in Box 10
(a) Goods wholly obtained or produced satisfying Article 3.2(a) of Chapter 3 of the Agreement	WO
(b) Goods produced exclusively from originating materials satisfying Article 3.2(b) of Chapter 3 of the Agreement	PE
(c) Goods produced using non-originating materials provided that the goods satisfy the product specific requirements set out in Annex 3A of the Agreement: -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 Regional Value Content - Chemical Reaction	CTC RVC CR
(d) Goods comply with Article 3.4 of Chapter 3 of the Agreement	ACU
(e) Goods comply with Article 3.7 of Chapter 3 of the Agreement	DMI

7. **EACH GOOD CLAIMING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QUALIFIES IN ITS OWN RIGHT:** It should be noted that all the goods in a consignment qualifies separately in their own right.
8. **RCEP COUNTRY OF ORIGIN:** The RCEP country of origin should be indicated separately for each good in the manner shown in the following table:

Circumstances	Insert in Box 11 – RCEP country of origin
(a) Goods are in Appendix to Annex I of the importing Party but do not meet the additional requirement specified in the Appendix to Annex I i.e. a Domestic Value Addition of 20% (DV20).	Indicate the name of the Party that contributed the highest value of originating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at good in the exporting Par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2.6.4.
(b) Goods that are not in the Appendix to Annex I of the importing Party, are produced exclusively from originating material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b) of Chapter 3 of the Agreement but are not processed beyond minimal operations set out in Article 2.6.5 of Chapter 2 of the Agreement in the exporting Party.	
IN ALL OTHER CIRCUMSTANCES, including	Indicate the name of the exporting Party
(c) Goods are in Appendix to Annex I of the importing Party and meet the additional requirement specified in Appendix to Annex I i.e. a Domestic Value Addition of 20% (DV20).	
(d) Goods are wholly obtained or produc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a) of Chapter 3 of the Agreement	
(e) Goods that are not in the Appendix to Annex I of the Importing Party and satisfy the applicable requirements set out in Annex 3A (Product-Specific Rul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c) of Chapter 3 of the Agreement.	
(f) Goods that are not in the Appendix to Annex I of the importing Party, are produced exclusively from originating material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b) and are processed beyond minimal operations set out in Article 2.6.5 of Chapter 2 of the Agreement in the exporting Party.	

Notes: Notwithstanding the above, under paragraph 6 of Article 2.6 of Chapter 2 of the Agreement the importer is allowed to make a claim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at either:

- the highest rate of customs duty the importing Party applies to the same originating good from any of the Parties contributing originating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such good, (Article 2.6.6(a)), or
- the highest rate of customs duty that the importing Party applies to the same originating good from any of the Parties (Article 2.6.6(b)).

When the RCEP country of origin cannot be ascertained, based on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exporter/producer and importer, indicate the name of the Party with the highest rate of customs duty followed by " * " if the Article 2.6.6(a) of Chapter 2 of the Agreement is being used or " ** " if the Article 2.6.6(b) of Chapter 2 of the Agreement is being used. For example: Australia * or Indonesia **.

9. **FOB VALUE:** The FOB value in Box 12 only needs to be provided when the Regional Value Content criterion is applied in determining the originating status of goods.
10. **INVOICES:** Indicate the invoice number and date in Box 13. If multiple invoices are used, indicate the invoice number and date for each item. The invoice is the one issued for the importation of the good into the importing Party. In cases where invoices used for the importation are not issued by the exporter or producer,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0 of Chapter 3 of the Agreement, the "Third-party invoicing" box in Box 17 should be ticked (✓), and the name and country of the company issuing the invoice should be provided in Box 14.
11. **BACK-TO-BACK CERTIFICATE OF ORIGIN:** In the case of a back-to back Certificate of Origin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19 of Chapter 3 of the Agreement, the "Back-to-back Certificate of Origin" box in Box 17 should be ticked (✓), and the original Proof of Origin reference number, date of issuance, issuing country, RCEP country of origin of the first exporting Party, and, if applicable, approved exporter authorisation code of the first exporting Party should be indicated in Box 14.
12. **ISSUED RETROACTIVELY:** Where a Certificate of Origin is issued retrospectively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8 of Article 3.17 of Chapter 3 of the Agreement, the "ISSUED RETROACTIVELY" box in Box 17 should be ticked (✓).
13. **CERTIFIED TRUE COPY:** Where a certified true copy of the original Certificate of Origin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9 of Article 3.17 of Chapter 3 of the Agreement, the words "CERTIFIED TRUE COPY" and the date of issuance of the certified true copy should be indicated in Box 14.
14. **FOR OFFICIAL USE:**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importing Party may indicate (✓) in the relevant box in Box 5 in accordance with their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15. **REMARKS:** Box 14 should only be filled out when necessary and contain information including as specified in Paragraphs 10, 11, and 13 of the Overleaf Notes.

Continuation Sheet

Certificate No.

Form RCEP

6. Item number	7.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8. Number and kind of packages; and description of goods.	9. HS Code of the goods (6 digit-level)	10. Origin Confering Criterion	11. RCEP Country of Origin	12. Quantity (Gross weight or other measurement), and value (FOB) where RVC is applied	13. Invoice number(s) and date of invoice(s)
14. Remarks							
15. Declaration by the exporter or produc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s are correct and that the goods covered in this Certificate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These goods are exported to: (importing country) Place and date, and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16. Certification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information herein is correct and that the goods describe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eal or stamp of Issuing Body			

원산지 국가	세율부호	내 용
뉴질랜드	FRCNZ1	- 하나의 품목번호에 1개의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경우 최고세율 적용물품
	FRCNZ2 FRCNZ3 FRCNZ4 FRCNZ5 FRCNZ6 FRCNZ7 FRCNZ8 FRCNZ9 FRCNZ10	-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경우 최고세율인 FRCNZ1을 제외하고 세율이 높은 순으로 FRCNZ2부터 FRCNZ10까지 순차 적용
	FRCNZ11	- 추천이 필요한 물품 중 추천을 받은 물품
	FRCNZ12	- 긴급수입제한조치 품목 중 발동 수준을 초과한 물품
아세안	FRCAS1	- 하나의 품목번호에 1개의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경우 최고세율 적용물품
	FRCAS2 FRCAS3 FRCAS4 FRCAS5 FRCAS6 FRCAS7 FRCAS8 FRCAS9 FRCAS10	-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경우 최고세율인 FRCAS1을 제외하고 세율이 높은 순으로 FRCAS2부터 FRCAS10까지 순차 적용
	FRCAS11	- 추천이 필요한 물품 중 추천을 받은 물품
	FRCAS12	- 긴급수입제한조치 품목 중 발동 수준을 초과한 물품
일본	FRCJP1	- 하나의 품목번호에 1개의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경우 최고세율 적용물품
	FRCJP2 FRCJP3 FRCJP4 FRCJP5 FRCJP6 FRCJP7 FRCJP8 FRCJP9 FRCJP10	-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경우 최고세율인 FRCJP1을 제외하고 세율이 높은 순으로 FRCJP2부터 FRCJP10까지 순차 적용
	FRCJP11	- 추천이 필요한 물품 중 추천을 받은 물품
	FRCJP12	- 긴급수입제한조치 품목 중 발동 수준을 초과한 물품

원산지 국가	세율부호	내 용
중국	FRCCN1	- 하나의 품목번호에 1개의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경우 최고세율 적용물품
	FRCCN2 FRCCN3 FRCCN4 FRCCN5 FRCCN6 FRCCN7 FRCCN8 FRCCN9 FRCCN10	-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경우 최고세율인 FRCCN1을 제외하고 세율이 높은 순으로 FRCCN2부터 FRCCN10까지 순차 적용
	FRCCN11	- 추천이 필요한 물품 중 추천을 받은 물품
	FRCCN12	- 긴급수입제한조치 품목 중 발동 수준을 초과한 물품
호주	FRCAU1	- 하나의 품목번호에 1개의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경우 최고세율 적용물품
	FRCAU2 FRCAU3 FRCAU4 FRCAU5 FRCAU6 FRCAU7 FRCAU8 FRCAU9 FRCAU10	-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경우 최고세율인 FRCAU1을 제외하고 세율이 높은 순으로 FRCAU2부터 FRCAU10까지 순차 적용
	FRCAU11	- 추천이 필요한 물품 중 추천을 받은 물품
	FRCAU12	- 긴급수입제한조치 품목 중 발동 수준을 초과한 물품

0. Explanatory Note

The Implementing Guidelin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Gs”) have been developed with the intention of facilitating the understanding of Chapter 3 (Rules of Origin) of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The IGs do not form part of the Agreement and in case there is any conflict between the IGs and the Agreement, the provisions in the Agreement will prevail.

1. Parties and Signatories

Parties and signatory States which accept the Proof of Origin (hereinafter referred to as “PO”) for the purpose of claiming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under the Agreement:

Australia	Brunei Darussalam	Cambodia	China
Indonesia	Japan	Korea	Lao PDR
Malaysia	Myanmar	New Zealand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Viet Nam	

For greater certainty, a signatory State accepts the PO once it become a Party. The Parties, who have implemented the Agreement are listed in <https://rcepsec.org/rules-of-origin/>.

For the purposes of indicating the name of a country in a PO, it should be in the same manner as appeared above.

2. Certificate of Origin

- a. An application for a Certificate of Origin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 is to be made in accordance with Article 3.17 of the Agreement by an exporter, producer, or their authorised representative to the issuing body of the exporting Party, together with supporting documents proving that the good to be exported qualifies for the issuance of a CO.
- b. The issuing bodies of the Parties are listed in <https://rcepsec.org/rules-of-origin/>.
- c. The format of the CO as determined by the Parties under Article 3.17 subparagraph 3(a) of the Agreement appears in <https://rcepsec.org/rules-of-origin/>. The CO will be issued in this format according to the description of the Overleaf Notes.

3. Declaration of Origin

Approved exporters can use any format for a Declaration of Origin (hereinafter referred to as “DO”) provided that it contains all relevant information as specified in the Minimum Information Requirements of Annex 3B of the Agreement, the manner of reflecting the DO information requirements should follow the description of the RCEP CO Overleaf Notes, where applicable.

4. Back-to-back PO

- a. An issuing body of an intermediate Party may issue a back-to-back CO, and an approved

exporter or any exporter of an intermediate Party may issue a back-to-back DO in accordance with Article 3.19 of the Agreement. For greater certainty, any exporter can complete a back-to-back DO only if the intermediate Party and the final importing Party have already implemented subparagraph 1(c) of Article 3.16 of the Agreement (DO by any exporter of producer)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that Article.

- b. In case of the back-to-back DO is issued by an approved exporter, it should be completed only for goods for which the approved exporter has been allowed to do so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intermediate Party.

5. PO in Electronic Format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 5(a) of Article 3.16 of the Agreement, Parties may accept a PO, or issue a CO in electronic format e.g. a PDF file. The list of the Parties who accept a PO, or issue a CO in an electronic format and the relevant conditions of each Party can be found on <https://rcepsec.org/rules-of-origin/>.

6. Calculation of Regional Value Content and FOB value

- a. The regional value content of a good is to be calculated using the formulas provided in Article 3.5 of the Agreement.
- b. When the actual FOB value of a good is unknown or cannot be ascertained, the “FOB value” referred to in subparagraph (e) of Article 3.1 of the Agreement and “FOB”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Article 3.5 of the Agreement can be substituted with the last ascertained value of the goods known to the exporter or producer who applies for the CO or completes the DO.
- c. In the case of back-to-back PO, the FOB value to be indicated in the back-to-back PO should be that of the intermediate Party.
- d.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e importing Party should not deny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for the sole reason that the FOB value indicated in the PO is different from the actual FOB value indicated in the invoice, but may undertake a verification if necessary.

7. HS Code of the Goods

- a. The HS should be at the 6-digit level of the exported product and based on Annex 3A of the Agreement.
- b. The customs authority of an importing Party may disregard as minor discrepancy any difference between the HS code of an importing good indicated in a PO and that of importing Party, provided that it does not create doubt as to the originating status of the go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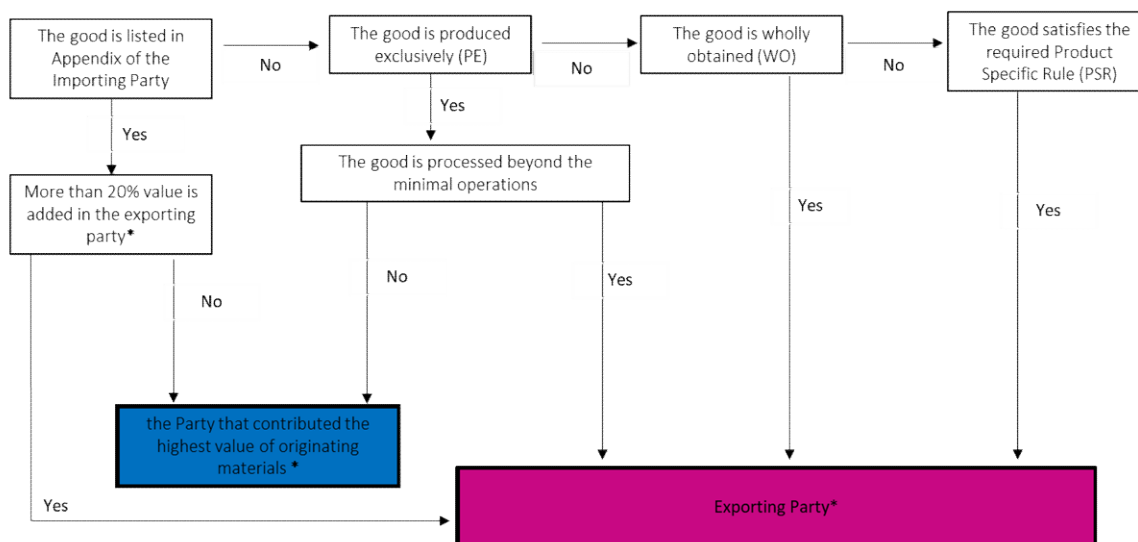
8. Tariff Differentials and RCEP country of origin

- a. In the Agreement, some parties apply different tariff rate for the same originating good of different parties. When an importing Party sets out more than one tariff rate for a good to be imported, the tariff rate to be applied for that good is the rate allocated the RCEP country of origin of that good. This is why identifying the RCEP country of origin of a good being

exported is one of the minimum information requirements provided in Annex 3B of the Agreements, and as such any PO needs to contain this information.

- b. The RCEP country of origin for an originating good i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6 of the Agreement (a guide is provided in Figure 1) and the description of the Overleaf Notes.
- c. For the common concession goods, circumstance (b) in paragraph 8 of the RCEP CO Overleaf Notes is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RCEP country of origin, and does not affect the application of preferential treatment in importing Party.
- d. In the case of back-to-back PO, an applicant of a back-to-back CO or person who completes a back-to-back DO needs to identify the RCEP country of origin of the good. In this case it should be noted that the RCEP country of origin of the good indicated in the back-to-back PO can be different from that of the original PO, as it depends on the tariff commitment of the importing Party. For example, even when a good is not listed in Appendix to Annex I of the Agreement of the intermediate Party and RCEP country of origin for the good is the exporting Party, the good may be listed in Appendix to Annex I of the Agreement of the final importing Party and RCEP country of origin may be the Party that contributed the highest value of originating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at good. Therefore, if the good is listed in Appendix to Annex I of the Agreement of the importing Party or the good is produced exclusively and subject to tariff differentials in Annex I of the Agreement of the importing Party, the applicant of back-to-back CO or person who completes back-to-back DO should have information to prove the RCEP country of origin of the good.

Figure 1
Flow chart of determining RCEP country of origin of a good



Note: Notwithstanding the above diagram, the importer may choose to use paragraph 6 of Article 2.6 of the Agreement. For example, if the exporter/producer does not know or cannot ascertain the RCEP country of origin. In the case exporter/producer and importer should discuss which Party is to be nominated as the RCEP country of origin.